

##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

※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를 하고, 색상이 어두운 란 및 을부번호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자	처리기간 즉시 (항공기·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)
설정 대상	[V]자동차	[ ]건설기계	[ ]항공기
	[ ]소형선박		
	등록번호(등록기호) <b>123가4567</b>	을부번호 <b>1111-2222-333333</b>	
저당권 변경 사항	변경 전	<b>채권금액 일천만원</b>	
	변경 후	<b>채권금액 삼천만원</b>	
대위 원인			

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.

2020년 1월 1일

신청인

**홍길동**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첨부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</li> <li>저당권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(건설기계·소형선박·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며,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·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합니다)</li> <li>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(저당권의 변경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</li> <li>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(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</li> <li>공동저당의 경우에는 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</li> </ol>	<p>수수료</p> <p>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」 제10조에서 정한 금액</p>
------	---	---

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